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4 선고 2019나54285 판결 [계약금반환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4 선고 2019나5428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5 선고 2018가단5262021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하

담당변호사 이춘상

피고, 항소인B

변론 종결2020. 6. 16.

판결 선고2020. 7. 14.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5. 선고 2018가단5262021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에 적을 판결이유는 다음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드라마 편성이 확정되지 않은 것은, 원고가 드라마국을 중국에 매각한다는 사실을 피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의 담당자가 자주 교체되는 등 원고가 하여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하였으며, 필요한 지원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드라마 편성을 확정짓지 못하고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되었더라도 피고가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드라마 편성의 의무는 피고에게 있음은 이 사건 변경합의의 문언상 명백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판사김용한

판사노태현

판사김창현